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329
----------	------

2020년 5월 4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1년 4월 2일
- 다. 회부일 : 2021년 4월 6일
- 라. 상정일 :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21년 4월 2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병한 재무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이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(행정안전부훈령)으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이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으로 통합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함(안 제4조 및 제6조제1항).
-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항목에 비목을 추가함(안 제7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(비용발생 요인 없음).
- 다. 입법예고(2021. 1. 21.~2. 10.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,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※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직속기관,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산하기관(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, 투자·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)에 대하여, 매달 업무추진비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2조 및 제7조).

가. 입법 배경 및 필요성 검토

- 행정안전부는 훈령 개정을 통하여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시 특근매식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되,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,
 -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강화하여 집행내역 공개항목에 비목*, 방법 등 집행내역 공개기준을 마련(별표 신설, 첨부)하는 등 제명을 포함하여 개정함바 있음.

*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

※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개정[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, 2021.1.1. 시행],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-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산하기관은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라 특근매식비, 업무추진비 운영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업무에 즉시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

수해야 한다. 1.2. (생략) ② (생략)	-----. 1.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다만, 행정안전부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인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을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」에 통합하여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)으로 2020년 5월 1일 개정하였다가,
 - 7개월 후 또다시 「지방회계관리훈령」(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, 2021.1.1.시행)으로 제명 등을 개정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, 행정안전부의 잦은 근거 규정 개정엔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,
 - 재무국은 상위 근거규정의 개정 단계마다 이를 적기에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2)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확대 사항 반영(안 제7조)

- 안 제7조는 업무추진비집행기준을 강화하고자 집행내역 공개항목으로 ‘비목’을 추가한 「지방회계관리훈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사용내역 공개) ① (생략)	제7조(사용내역 공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, 집행일자(시간 포함), 집행장소, 집행목적, 집행금액, 집행대상, <u>지출방법</u>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출방법, 비목</u> ----- -----.

- 집행내역 공개항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는 비목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임.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중 별표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중
 -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내역을 공개하며 대상 비목은 아래와 같다.
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

- 예 시 -

사용자 ¹⁾	일시 ²⁾	장소 ³⁾	집행목적 ⁴⁾	대상 인원수 ⁵⁾	금액 ⁶⁾	결제 방법 ⁷⁾	비목 ⁸⁾
예산과장	2020-03-06 14:25	네○식당	지역사랑상품권사업 국회관계자 예산설명 간담회	8	40,000	신용 카드	시책
예산팀장	2020-03-15 15:23	세모카페	지역사랑상품권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기재부 담당자와 간담회	5	20,000	신용 카드	시책

- ※ 서울시 업무추진비 비목: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부서운영업무추진비, 정원가산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(「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운영기준(2021년)」 143p, 첨부)
- ※ 서울시 공기업(공사, 공단), 출자·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비목: 업무추진비(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67p,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20p 참조)
- ※ 서울시공기업(직영기업(상수도사업본부 등)) 업무추진비 비목: 직책급업무추진비, 기관운영 업무추진비, 부서운영업무추진비, 정원가산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(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59p 참조)

3) 기타(부칙)

-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
 - 근거 규정인 「지방회계관리훈령」은 2021.1.1.부터 시행되고 있는바, 본 개정조례안 시행일을 본 훈령에 맞추어 소급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,

- 본 훈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, 서울특별시와 그 직속 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는, 본 개정조례안 시행과 상관없이, 「지방회계 관리훈령」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바,
- 시 산하 지방공기업, 투자·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훈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 소급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.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이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(행정안전부훈령)으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이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으로 통합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함(안 제4조 및 제6조제1항).

나.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항목에 비목을 추가함(안 제7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- 2)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1. 1. 21.~2. 10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지출방법”을 “지출방법, 비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이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(행정안전부훈령)으로 통합 및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 별도의 재정지출 증가가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재무국 재무과 김향숙 (02-2133-3228)